

【 3 】 양주군군청및읍·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2000. 3. 28

제출자 양주군수

□ 개정이유

현재 의정부에 소재한 양주군청사가 2000년 9월경 준공예정인 양주군 주내면 소재 신청
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제2조 별표의 양주군청 소재지를 의정부시 의정부4동에서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로 변경
함(안 제2조 별표)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군청및읍·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군청및읍·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신청사를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군청및읍·면사무소소재지(제2조관련)

기 관 명	소 재 지
양 주 군 청	양주군 주내면 남방리
회천읍 사무소	양주군 회천읍 덕정리
주내면 사무소	양주군 주내면 남방리
은현면 사무소	양주군 은현면 선암리
남 면 사무소	양주군 남 면 신산리
광적면 사무소	양주군 광적면 가남리
백석면사무소	양주군 백석면 오산리
장홍면사무소	양주군 장홍면 일영리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기 관 명	소 재 지	기 관 명	소 재 지
양 주 군 청	의정부시 의정부 4동	-----	양주군 주내면 남방리
회천읍사무소	양주군 회천읍 덕정리	-----	-----
주내면사무소	양주군 주내면 남방리	-----	-----
은현면사무소	양주군 은현면 선암리	-----	-----
남 면 사 무 소	양주군 남 면 신산리	-----	-----
광적면사무소	양주군 광적면 가납리	-----	-----
백석면사무소	양주군 백석면 오산리	-----	-----
장홍면사무소	양주군 장홍면 일영리	-----	-----

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

와 廣城市의 管轄區域안에 둔다. <改正 94·12·20>

③特別市 또는 廣城市가 아닌 人口 50萬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, 郡에는 邑·面을 두며, 市와 區(自治區를 포함한다)에는 洞을, 邑·面에는 里를 둔다. <改正 94·12·20>

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, 그밖의 地域에는 邑·面을 두되,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경우에는 당해 區에 邑·面·洞을 둘 수 있다. <新設 94·3·16, 94·12·20>

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

第4條 (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)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·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, 市·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·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(이하 “地方議會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改正 99·8·31>

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·面·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,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·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다만, 區域變更은 特別市長·廣城市長·道知事(이하 “市·道知事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<改正 99·8·31>

④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·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⑤洞·里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·里를 2개이상의 洞·里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洞·里를 하나의 洞·里로 운영하는 등 行政運營上 洞·里(“行政洞·里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⑥第5項의 行政洞·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.

第5條 (區域變更, 廢置·分合時의 事務와 財產의 承繼) ①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廢置·分合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地域을 관할하게 된 地方自治團體가 그 事務와 財產을 承繼한다.

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地域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및 財產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市·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이, 市·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·道知事が 그 事務와 財產의 限界 및 承繼할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한다. <改正 94·12·20, 99·8·31>

第6條 (事務所의 所在地) ①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의 所在地와 自治區가 아닌 區 및 邑·面·洞의 事務所의 所在地는 종전에 의하고, 이를 變更하거나 새로 設定하는 경우에는 市·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과 미리 協議를 거치고, 市·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·道知사와 미리 協議를 거친 후 당해 地方自治

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

團體의 條例로 정하며.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·面·洞에 있어서는 그 市·郡 및 自治區의 條例로 정한다. 이 條項에 있어서의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. <改正 94·12·20, 99·8·31>

②第1項의 條例는 당해 地方議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. <改正 94·12·20>

第7條 (市·邑의 設置基準等) ①市는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5萬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은 이를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. <改正 95·8·4>

1.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

2. 人口 5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

3. 人口 2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2개이상의 地域의 人口가 5萬이상인 郡. 이 경우 郡의 人口가 15萬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③邑은 그 大部分이 都市의 形態를 갖추고 人口 2萬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人口 2萬미만인 경우에도 邑으로 할 수 있다. <改正 94·12·20>

1. 郡事務所 所在地의 面

2. 邑이 없는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 그 面중 1個面

④削除 <99·8·31>

⑤市·邑의 設置에 의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3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과 事務

第8條 (事務處理의 基本原則)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地方自治團體는 組織 및 운영의 合理化에 노력하고 그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
③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나 上級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반하여 그 事務를 처리할 수 없다.

第9條 (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)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. 다만,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改正 95·12·29, 99·2·8>

1. 地方自治團體의 區域, 組織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

가.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·位置 및 區域의 調整

나. 條例·規則의 制定·改廢 및 그 운영·管理

다. 奉下 行政機關의 組織管理

라. 奉下 行政機關 및 團體의 指導·監督

국 세율 50% 납이기 적극 동참합시다

경 기 도

☎ 441-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/ ☎ (033) 42-5101 / 2223 / FAX 5813

문서번호 지방 13200 - 158

시행일자 1995. 1. 5. (년)

(경유)

발 음 양주군수

참 조 재무과장

제 목 양주군 사무소 소재지 변경승인

선결	순수	158	시	
진	일자		시	
	시간	1995 1 5	진	부순수 158
수	번호	1119(15)	제	과장
	처리 과		공	
	담당자		람	

내부과장 3/2

1. 재무 13330-44 ('95. 1. 5) 호와 관련임.

2. 양주군 사무소 소재지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
변경 승인함.

불 입 양주군 사무소 소재지 변경승인서 1부. 끝.

경 기 도 지





경기도 제 / 호

양주군 사무소 소재지변경 승인서

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양주군 사무소 소재지
변경을 승인함

95년 월 일

경기도지사



□ 승인 내용 : 양주군 사무소 소재지 변경

○ 사무소 소재지 변경내역

구 분	현 사무소 소재지	변경사무소 소재지
양주군 사무소	의정부시 의정부동 220-66	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산 1-7

제6편 재무 제3장 관제·세외수입 양주군군청및읍·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

양주군군청및읍·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

[1988. 12. 9]
조례 제1230호]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소재지) 군청 및 읍·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.

부 칙 (1988. 12. 9 조례 제1230호)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및 양주군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(별표)

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

기 관 명	소 재 지
양 주 군 청	의정부시 의정부 4동
회 천 읍 사 무 소	양주군 회천읍 덕정리
주 내 면 사 무 소	양주군 주내면 남방리
온 현 면 사 무 소	양주군 온현면 선암리
남 면 사 무 소	양주군 남 면 신산리
광 적 면 사 무 소	양주군 광적면 가납리
백 석 면 사 무 소	양주군 백석면 오산리
장 흥 면 사 무 소	양주군 장흥면 일영리

양주군군청및읍·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개정

□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□ 개정이유

현재 의정부에 소재한 양주군청사가 2000년 9월경 준공예정인 양주군 주내면 소재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제2조 별표의 양주군청 소재지를 의정부시 의정부4동에서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로 변경(안 제2조 별표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양주군사무소 소재지 변경승인 관련 공문(경기도 지방 13200-158호)
- 현행조례